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32
----------	-----

2024. 7. 15.(월)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4년 7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7월 3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7월 15일

-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방무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사유

- 5자녀 이상 초(超)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육 여건 개선을 통한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초 다자녀가정 정의(안 제2조 제2호)
- 초 다자녀가정 지원(안 제6조의2)

### 3. 검토보고 요지

#### 가. 제출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초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초 다자녀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는 초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다섯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초 다자녀가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함.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u>	<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1. “ <u>다자녀가정</u> ”이란 <u>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u> 을 말한다. 2. “ <u>초 다자녀가정</u> ”이란 <u>다섯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u> 을 말한다.

- 안 제6조의2는 초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양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초 다자녀 가정의 양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6조의2(초 다자녀가정 지원) ①  <u>도지사는 초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p>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초 다자녀가정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초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초 다자녀가정의 양육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초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은 지난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518,000천원(도비 40%, 시군비 60%)이 계상되어 기(既) 의결되었으나, 도내 11개 시·군 중 사업 대상이 가장 많은 청주시와는 아직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청주시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초 다자녀가정”이란 다섯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초 다자녀가정 지원) ① 도지사는 초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li> <li>2. “초 다자녀가정”이란 다섯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li> </ol> <p>제6조의2(초 다자녀가정 지원) ①</p> <p>도지사는 초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p>

## 관련법령 발췌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지원기준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5명 이상 초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정
- 사업량 : 800명
- 사업내용 :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 지원
  - 단, 18세 이하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2. 비용 발생 요인

- 초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신규 추진

## 3. 관련조문

- 안 제6조의2(초 다자녀가정 지원)

##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 결과 :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4,000백만원 소요
- 재원조달방안 : 지방비(자체재원)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분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세출	4,0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재원조달	4,0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자체수입 (지방세)	4,0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 6. 작성자 : 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